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87

발의연월일: 2022. 10. 31.

발 의 자:이용호·강대식·구자근

김예지 • 박덕흠 • 서정숙

성일종・양금희・이 용

장동혁 · 전주혜 · 정우택

최영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내 진출 가속화로 인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 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 정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 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 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의 제목 중 "세액공제"를 "세액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영상콘텐츠"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100분의 7"을 "100분의 9"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상영된"을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제25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산방법"을 "계산방법, 투자금액의계산방법"으로 한다.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 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u>세액공제</u>) ① 대통령	에 대한 <u>세액공제 등</u>) ①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u>2022</u>	<u>2025</u>
<u>년 12월 31일</u> 까지 다음 각 호	년 12월 31일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방</u>	<u>영상</u>
<u>송프로그램 및 영화</u> (이하 이	<u>콘텐츠</u>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	
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	
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	
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	<u>100분의 5</u>
견기업의 경우에는 <u>100분의 7</u> ,	<u>100분의 9</u>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u>100분의</u>
<u>10</u>)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	<u>12</u>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u>상영된</u>	<u>상영되</u>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u>.</u>

1.·2. (생략) <u><신 설></u>

<신 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현행과 같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